## 미국형법에 규제된 《중간처벌》과 그 반동성

김 철 희

미국형법에서 형벌종류의 하나로 규제하고있는 《중간처벌》과 그의 반동성을 법률적으로 까밝히는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의 외피로 가리우고있는 미국의 기만적이고 파쑈적인 형사법률제도를 정확히 인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그 계급적성격과 사명으로 보아 철두철미 반동적이고 반인민적 인것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법은 철두철미 착취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강권정치의 도구로서 반동적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실현의 수단으로 복무한다.

현시기 미국의 통치배들과 그 리론적대변자들인 어용법학자들이 《사회적처벌》로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중간처벌》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미명아래 범죄 로 얼룩져있는 미국사회의 본질을 가리우고 범죄로 인한 재정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제정된 형벌수단에 불과하다.

미국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중간처벌》은 《사형》과 《감금》, 《집행유예》, 《벌금》 등과함께 미국에서 기본형벌중의 하나로 되여있다. 이러한 《중간처벌》에는 《집중감독의 집행유예 및 가석방》과 《일보고쎈터》, 《일벌금》, 《주택제한 및 전자감시》, 《사회복귀훈련소》등의 처벌형태들이 포함되여있다.

여기서 《집중감독의 집행유예 및 가석방》처벌은 감금형을 받은자에 대하여 감옥관리 당국이 내리는 가석방이나 형벌로서의 집행유예에서보다 더 엄격한 조건들과 세밀한 감독 등 강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처벌이며 《일보고쎈터》는 자기 집에서만 생활할것을 허락받은 범죄자들이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자기 생활에 대해 보고하고 그들이 감독조건과 관련한 요구를 준수하도록 하게 하는 처벌이다. 《일벌금》처벌은 벌금형에서처럼 고정액수로 벌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범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이며 《주택제한 및 전자감시》는 범죄자들에게 재판소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부재기간을 제외하고는 자기 집에 남아있을 의무를 지우는 처벌을 말한다. 《사회복귀훈련소》처벌은 감금형을 받고 일정한 기간 감옥생활을 한 범죄자들을 형무소나 감옥이 아닌 제한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일정한 지역적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벌을 말한다.

미국형법에서는 이러한 처벌들이 제재의 경중에 있어서 사형과 감금보다는 가벼우나 제재정도에 있어서 집행유예와 벌금형보다는 무겁기때문에 《중간처벌》이라고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중간처벌》이 범죄자들을 국가적인 강제시설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법이 규정한 준수조건들을 지킬것을 요구하는 형벌이라는데로부 터 이것을 일명 《사회적처벌》이라고도 부르고있다.

오늘 미국은 《중간처벌》이 국가적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적속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그것이 미국에서 범죄를 막고 범죄자들을 《개조》시키는 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벌로 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중간처벌》은 철저히 미국의 통치배들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에서 추구하고있는 반동적인 형사정책의 집중적인 반영일뿐아니라 저들의 범죄적행위를 무마시

키고 범죄로 얼룩진 미국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형벌적수단에 불과하다.

미국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중간처벌》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미국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을 직접 반영하고 그 실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안받침하고있는 형벌적수단이라는데 있다.

력대 미국의 통치배들은 형사관계를 통한 지배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의 중요 한 공간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를 정당화할수 있는 반동적인 형사정책을 적극 추구 하여왔다.

미국은 형사관계를 통한 지배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일찌기 범죄가 사회의 본질적내용으로,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된다고하면서 범죄에 대한 반동적인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여놓았다. 그들은 범죄가 그 무슨 《사회의 존재와 함께 있게 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일뿐아니라 《모든 사회의 기준》이며 지어 《필요이고 특징》이라는 반동적인 범죄관에 기초하여 범죄를 《조종》,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려고 책동하여왔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초기부터 범죄와 관련하여 그의 근절에 대하여서는 론하지 않고 오직 범죄의 《조종》, 《통제》만을 주장하여왔던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범죄자를 징벌하여 다시는 범죄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범죄적요소를 가지고있는자들에게 공포와 경고, 심한 자극과 교훈을 주어 그들이 범 죄의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며 그 실현에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재판기관이 선고하는 형벌로서의 《중간처벌》이라는것은 그것을 이루는 처벌형태들이 그 어느것이나 다 형벌의 고유한 목적과 속성에 맞게 규정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에서 《중간처벌》을 구성하고있는 《집중감독의 집행유예 및 가석방》이나 《일보고 쎈터》, 《일벌금》, 《주택제한 및 전자감시》, 《사회복귀훈련소》 등의 처벌형태들은 그 명칭만 보고도 그것이 제재방식에서 그 어떤 육체적강제도 동반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처벌들은 모두 범죄자를 사회에 그대로 두고 일정한 자유만을 제한하는데 그치고있으며 따라서 형벌이라고 볼수 없는 처벌형태들인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간처벌》이 크고작은 대다수 범죄들에 다 적용될수 있는 기본형벌의 하나로 규제되여있을뿐아니라 가장 많이 적용하는 형벌로 되여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2010년말현재 《중간처벌》이나 《집행유예》를 비롯한 《사회적처벌》을 받고있는자가 거의 500만명에 달하고있다는 미사법성의 자료가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바로 《중간처벌》과 같은 형벌아닌 《형벌》의 적용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통치계급의 파쑈적지배를 《합법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형벌종류들을 놓고볼 때 서로 다른 종류로 규정되여있는 《중간처벌》과 《집행유예》는 제재형식에서 본질상 같은 종류에 속하는 형벌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더우기 《중간처벌》은 《집행유예》방식의 처벌을 자체내에 하나의 형태로서 내포하고있다.

형벌은 생명형과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 명예형 등으로 구분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자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박탈기간에 따라 유기자유형과 무기자유형으로 가르며 자 유박탈의 정도에 따라 자유박탈형과 자유제한형으로 나누어 규제하는것이 원칙이다. 이리 한 원리에 따라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형벌의 종류들을 규정하고있으며 자체의 실정을 반영하여 매 종류안에서 서로 다른 형태들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원칙과는 달리 미국의 형법에서는 형벌종류와 관련하여 같은 종류에 속하는 《중간처벌》과 《집행유예》를 서로 다른 독자적인 형벌로 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형법에서는 같은 형벌종류로 볼수 있는 자유제한형의 성질을 가지는 《중간처벌》과 《집행유예》를 서로 다른 독자적인 종류로 규정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중간처벌》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처벌형태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매우 넓히고있다.

미국이 형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규제하고있는것은 미국에 범람하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조금이나마 더는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범죄에 대한 《조종》과 《통제》의 합법적공간을 조성하는것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형사적지배를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중간처벌》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사회적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이 수감자의 2배를 훨씬 넘고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하여주고있다.

《중간처벌》은 원래 형벌로서 새롭게 제정된것이 아니라 미국의 력대 통치배들의 반 동적인 형사정책으로 하여 급속히 늘어난 범죄자문제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형 벌》이다.

미국의 력대 통치배들은 초기부터 범죄가 《사회의 존재와 함께 있게 되는 사회의 자연적현상》이라는 반동적인 관점밑에 범죄에 대해 구태여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쓸것이 아니라 범죄를 《조종》하고 《통제》하여 지배계급의 통치실현에 유리하게 리용해나가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여왔다.

미국은 저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으로 하여 빚어지는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르는 사회경제적문제들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 일부 소송단계들에서 적용하던 처벌들과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처벌형태들을 끌어들여 《중간처벌》이라는것을 적용하는데로 나가게 되였다.

미국은 《중간처벌》이라는 새로운 형벌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으로 인한 범죄적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 범죄의 《조종》, 《통제》로써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 를 실현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미국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중간처벌》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범죄로 얼룩진 미국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식하는 법률적수단이라는데 있다.

오늘 미국과 그 어용대변인들은 형벌아닌 《중간처벌》에 대하여 마치도 그것이 미국을 어지럽히고있는 범죄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형벌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체현하고있는 형벌이라도 되는듯이 떠들어대면서 썩어빠진 미국의 범죄실태를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제도자체가 범죄의 온상으로 되고있고 범죄에 대한 지배계급의 반동적인 관점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중간처벌》과 같은 형벌들을 무수히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범죄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

형벌이 형벌로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결코 형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오히려 범죄적행위의 롱락물로 되게 된다.

미국의 형법이 규제한 《중간처벌》은 그것이 형벌적성질을 가지고있지 못한 형벌아닌 형벌인것으로 하여 범죄방지수단이 아니라 범죄조장의 수단으로 적극 리용되고있다.

《중간처벌》의 한 종류인 《주택제한 및 전자감시》처벌은 미국자체가 인정하고있는것처럼 효능높은 처벌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범죄수법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촉매제나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방법의 적용이 범죄자들과 사법당국의 감시설비제작자들사이의 끊임없는 값비싼 경쟁을 야기시키고있으며 범죄자들은 새로운 감시기구가 쓰이기 전에 그에 대처할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과 방법들을 만들어 범죄수법을 더 《발전》시키고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간처벌》의 하나인 《사회복귀훈련소》처벌은 범죄자들에게 범죄행위와 범죄수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범죄의 서식지를 마련해주고있다. 왜냐하면 보통 6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사회복귀훈련소》안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범죄자들이 자기의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범죄수법과 방법들을 배우고 교환하게 되며 이 기 간 더욱 숙련된 범죄자로 《개조》되여 사회로 나가기때문이다.

《중간처벌》의 한 종류인《집중감독의 집행유예 및 가석방》을 놓고보더라도 그것이이미 존재하고있던 전통적인 집행유예와 가석방에서보다 엄격한 요구조건을 규제하고있다고 하지만 현재 이것을 받아들인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집중감독의 집행유예 및 가석방》처벌이 전통적인 집행유예와 가석방에 비하여 자금이 더 들기때문에 오히려 잘 적용하지 않고있다.

《중간처벌》의 다른 한 종류인 《일벌금》처벌도 그것이 범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하기때문에 부유한 범죄자들에게 너무 낮고 가난한 범죄자들에게는 너무 높다고 하는 고정벌금에 비하여 아주 공정한 처벌이라고 떠들어대고있지만 실지로는 지배계급의 리익을 침해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잘 적용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에서 《사회적처벌》이라고 하면서 그 무슨 《인권보장》과 《공정성》을 떠드는 《중 간처벌》은 이처럼 그 적용결과와 실태가 보여주는것처럼 미국의 범죄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형벌》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범죄가 《사회의 존재와 함께 필수적인 현상》이라는 관점밑에 《범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집권세력의 반동적인 범죄관에 기초하여나 온 형벌로서의 《중간처벌》은 오늘 범죄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미국을 더욱더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는 미국형법에 규제된 《중간처벌》의 반동적본 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형법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비판하여야 할것이다.